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29호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7. 5.

임실군의회의회장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철성 의원 대표발의)

1. 제 안 이 유

임실군 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재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범위 완화 (안 제15)

-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의 표고 ± 100 미터 외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하여 허가 가능토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

나.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 (안 별표16)

-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자원순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도로의 정의 명확화
-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입지기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용 도로

- 태양광발전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였으나,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마을로부터 조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완화

3. 참 고 자 료

-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 라. 입법예고 : 2024. 7. 5. ~ 7. 10. (5 일간)
- 마. 기 타
 - 1)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본안, 별첨)
 - 3)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위 표고기준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 중 (2) 자원순환시설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처분시설,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 및 함께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를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활용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 폐기물 감량화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고물상”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나 ““도로”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를 ““도로”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써,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른 차로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하며, 단서 중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를 “경우나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마을로부터 조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라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한다.

별표 16 제2호마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한다.

별표 16 제4호가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하며, “단, 제1호가목(2)(가) 중 제7호의 재활용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별표 16 제4호나목 “사업부지”를 “사업예정부지”로 한다.

별표 16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가목(2)(가) 중 제7호의 재활용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방지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들(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 다. (1) (생 략) (2) 자원순환시설: 「<u>자원순환기 본법</u>」 제2조에 따른 자원순 환시설 중 「<u>폐기물관리법</u>」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 처분 시설,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 량화시설과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 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 및 함께 건축하는 「<u>건축법 시행령</u>」 별표1 제22호의 자원 순환 관련시설 중 고물상, 폐 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 화시설을 말한다.	[별표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 -----. 가. ----- ----- -. (1) (현행과 같음) (2) 자원순환시설 (가)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3 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재활용 시설 (나) 「<u>폐기물관리법 시행령</u>」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 (다) 「<u>폐기물관리법 시행령</u>」 별표4 폐기물 감량화시설 (라) 「<u>건축법 시행령</u>」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고물상

(3)~(6) (생략)

나. “도로”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이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를 말한다.

다.~바. (생략)

2. 제1호가목(1)의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다만,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들이 동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 경우)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

(3)~(6) (현행과 같음)

나. “도로”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써,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9호에 따른 차로를 말한다.

다.~바. (현행과 같음)

2. -----

-----.

가. 도로로부터 사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 다만, 「임실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들이 동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 경우)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지형·

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생 략)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지,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련
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마. 공공시설부지(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국가유산(임
실군 지정 국가유산 이상), 전
통사찰로부터 사업부지 경계
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바.~하. (생 략)

3. (생 략)

4. 제1호가목 (2)부터 (6)까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
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
지 최단거리 150미터

지물에 의해 해당 마을로부
터 조망이 되지 않은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지,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련
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로부터 사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마. 공공시설부지(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국가유산(임
실군 지정 국가유산 이상), 전
통사찰로부터 사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바.~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

가. 도로로부터 사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단, 제1호가목(2)(가) 중 제7
호의 재활용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산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 100미터)

<신 설>

않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산업예정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 100미터)

다. 제1호가목(2)(가) 중 제7호의 재활용시설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방지 및 지역발전상생 계획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들(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通行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정철성 의원